2021 학부모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필수) 및 학부모(선택)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1.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아동복지법제3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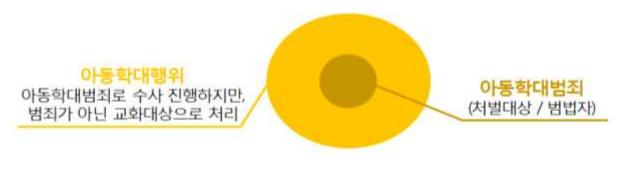
아동학대단?(아동복지법 제3조제/항)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병조환?(아동학대병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황)

-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 ·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제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아동학대행위 = 처벌(범죄자) ??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상담/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음.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가. 신체학대

신체하대

- ·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특히 아동학대치사 시,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함.

나, 정서학대

-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対盟

처벌법상

체포/감금(미수), 중체포/감금(미수), 특수체포/감금(미수), 제포감금치상, 협박(미수),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처리 가능함.

다. 성학대

-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법상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준강간, 미성년자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가능함.

라. 방임・유기

방임·유기

-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법상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 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3.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아동학대 신고 전화 1577 - 3191)**

4. 학부모의 바람직한 태도

내 자녀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과 행동보다는 아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대하기 / 가정에서는 귀가 후 아이들의 행방을 반드시 파악 / 가족 또는 친척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가 발견되면 신고하기